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28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 : 윤준병 · 허 영 · 박용갑

장철민 · 김태선 · 송옥주

정동영 · 서영교 · 주철현

박민규 · 강준현 · 이원택

허종식 • 박희승 • 박홍배

민병덕 • 김우영 • 신영대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

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바목, 같은 조 제12호 및 제12호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바목 및 같은 조 제12호 · 제1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제2조제10호바목, 자목"을 "제2조제10호자목"으로 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제64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64조의3부터 제64조의8까지, 제65조,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6까지 및 제6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2조제10호바목, 자목"을 "제2조제10호자목"으로, "빈집 정비와 농어촌"을 "농어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 제한다.

제118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3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	10
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	
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	
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	
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	
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	<u><삭 제></u>
·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	
<u>한다)</u>	
사. ~ 카. (생 략)	사. ~ 카. (현행과 같음)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	<u><</u> 삭 제>
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	
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	
한다. 이하 같다) • 군수 • 구	

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2의2.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64조의7에 따라 지 정된 구역을 말한다.

13. ~ 18. (생략)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저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

5. ~ 12. (생 략)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지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 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 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

/ ≥ 1	-1]	l 🔍
<4°	저	>

13. ~ 18. (현행과 같음)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	용)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 12. (현행과 같음)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	아)
①	

- 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 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 ② ~ ④ (생 략)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삭 제>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u>방향</u>
-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

 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

 계획 및 시행방법
-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관할 구역 내에 제

1. ~ 3. (현행과 같음)
4 <u>제2조</u>
제10호자목
② ~ ④ (현행과 같음)

64조의7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7.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 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 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 • 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 본법」 제8조에 따른 시·군· 구 수산업 · 어촌정책심의회(특 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 에는 시·도 농업·농촌및식품 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도 수산업 · 어촌정책심의회를 말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 장・군수・구청장의 경우: 해 양수산부장관
- 3. 제1호에 따른 농촌과 제2호 에 따른 어촌 모두를 관할 구 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 청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 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 (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 ·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 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 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소재 현황

혅황

- 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 <u>간</u>
-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① 시<삭 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빈집 및

> ②·③ (현행과 같음) <<u>삭</u> 제>

그 대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 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빈집 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 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에게 출입하려는 사람의 인적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 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소 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 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 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사람은 농림 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4조의4(빈집에의 출입에 따른 | <삭 제> 손실보상) ① 시장·군수·구 청장은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출입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

- <u>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u> 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 한다.

제64조의5(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64 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삭 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이용 및 요청·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빈집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 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

<삭 제>

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 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 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우선정비구 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 경 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 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① | <삭 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 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 정할 수 있다.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

집 비율이 높은 지역

- 2.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 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할 시·도경찰청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우선정비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56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 행자(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u><삭 제></u>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 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 화받을 수 있다.

-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 2.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 3.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 4.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
- 5.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 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 한
- 7. 「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 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삭 제> 책무) 빈집의 소유자등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

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

다.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군 수·구청장의 책무) 시장·군 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 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다.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①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 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 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 분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 오
-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있는 경우
-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

<삭 제>

<삭 제>

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 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 지도) ① 시장・군수・구청장 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 하여 해당 특정빈집의 위해요 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 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 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 <삭 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u><</u>삭 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조치 명령(개축·수 리는 제외한다)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 권으로 그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 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 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 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 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 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 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 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 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 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 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 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 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비 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 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 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로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 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 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 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 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 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 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및 활용)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
·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
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
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
용할 수 있다.

- 1. 생활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 2.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삭 제>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농 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 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 하는 용도로 활용

- ② 시・도지사등은 제1항제2호 에 따른 내외국인근로자의 사 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내외 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해 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 ③ 빈집의 매입 방법・절차 등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빈집의 활용 및 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 <삭 제>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 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 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 가 영농(營農)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제67조

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 정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 체는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 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 (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③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 5. (생략)
- 제1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 7 관·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
성 등) ①
<u>제2조제10호자목</u>
<u>농어촌</u>
② (현행과 같음)
③
1 0 (취원기 기수)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u> </u>
5. (현행과 같음)
제118조(청문)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u>빈집 소유자에 대한 철거 명</u> 령

5. ~ 7. (생략)

제1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2. (생략)
- 3. 제6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 ② ~ ④ (생 략)

제13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
수·구청장은 제65조의5제1항
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
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 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
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
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 의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 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5. ~ 7. (현행과 같음)	
데130조(벌칙) ①	
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 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 항까지에 따른다.